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와 입법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61년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많은 식품안전법령이 각 부처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과학의 발달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식생활 문화가 크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서 식품안전관리정책에 국가와 소비자 산업계가 모두 합심하여 참여할 수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선언적 규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업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년 40조원의 시장규모로 전체 제조업의 20.3%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식생활 개선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발생 억제를 위한 규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지나친 규제는 식품업계가 위축될 수 있고 농업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자에 대한 위해여부 확인·검사의 책무규정은 정부에서 규정한 금지된 유해물질에 대한 확인·검사로 한정하여야 하고 동 법안의 벌칙규정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관계식품안전법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중규제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 식품안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유통·판매중인 식품 등을 생산·판매 금지 시에는 금지된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는 의심이 있을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 결정하도록 하고, 추후에 조사·확인 결과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없을 때에는 생산·판매 금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동 제도의 남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권리 보호차원에서 규정한 분쟁조정, 집단소송제도는 지나친 피해구제 제도로서 식품영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식품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동 법 제정에 대한 산업계의 견의를 수렴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04. .

한국식품공업협회	회장	박승복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신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성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용구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인섭
대한제과협회	회장	김영모
대한제당협회	회장	김주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	남승우
한국급식관리협회	회장	박홍자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형수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호균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자현
한국식품수출입협회	회장	이정식
한국식품임가공협회	회장	김재현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회장	염호열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세준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기순
한국유가공협	회장	전화진
한국육가공협회	회장	박재복
한국인삼제품협회	회장	최석기
한국조미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연수
한국전문당협회	회장	한종태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윤세
한국제빵제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현도
한국제험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도운기
한국청량음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안경식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회장	전병남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유현종

의견요지

첫째,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어야 하고 규제 규정은 관계 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합니다.(정부안 제42조내지제43조,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대표발의안 제44조내지제47조)

- 식품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운영하는 식품안전법령에서 사업자의 의무규정과 의무위반시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안전기본법까지 집행하여야 하는 시·군·구 등에서는 관련법 집행에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식품안전기본법의 벌칙 규정은 삭제하고 영업자의 규제내용을 관계 식품안전법령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자의 책무에 위해여부의 확인·검사는 정부에서 정한 유해물질의 확인·검사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정부안 제5조제2항)

- 과학의 발달에 의한 정보교환은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위해성 논란이 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한국에 입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해물

질은 검사방법과 허용범위가 없는 상태임에도 사업자에게 확인·검사의 모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중한 책무를 전가하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정한 유해물질의 확인·검사로 검사범위를 한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긴급대응에 따른 식품 등의 생산·판매 금지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긴급대응 조치 결과 사업자에게 잘못이 없을 경우 보상하여야 합니다.(정부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내지제3항)

- 식품안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판매하는 식품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생산·판매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긴급대응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판단토록 하고, 금지조치의 근거는 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한 유해물질로 한정하고,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없다고 판명될 때에는 금지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는 식품안전관련 정보에 한정하고 불량식품 신고자의 신변보호 범위에 허위 신고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정부안 제24조제3항, 제29조)

- 식품사업자에 대한 공개 범위를 식품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하고 관련 없는 분야까지(예: 감사, 입찰, 인사, 의사결정과정 등) 사업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정보 공개를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량식품을 고의·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게 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조치를 하여 선량한 신고자만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식품분쟁조정, 식품집단소송 제도 등을 식품으로 인한 분쟁을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크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정부안 제31조내지제41조, 한나라당 고경화의원 대표발의안 제26조내지제31조,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 대표발의안 제30조내지제34조)

- 식품분쟁조정이나 식품집단소송 제도 등을 식품안전기본법이나 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한 사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식품분쟁조정은 소비자보호법과 제

조물책임법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품분쟁조정을 위하여 정부와 각 시·도에 식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분쟁조정보다 식품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품집단소송 제도는 세계시장이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에 대한 빈번한 집단소송제기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불신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를 주고 수출의 지장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사건의 공표결과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정부안 제26조제3항)

- 최근의 만두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우지라면 파동과 번데기 통조림사건의 사례를 보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나 무혐의 판결이 되었으나 해당기업들은 소비자와 언론의 질타 속에 부도로 파산되었거나 신뢰회복을 위해 무한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식품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언론이나 사회단체의 과장보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규정하여야 선량한 식품기업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관련기관의 책임을 지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하여 사업자의 피해구제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식품안전기본법(안)의 문제점 · 검토의견

1. 사업자의 위해여부 확인 · 검사범위의 명확화(정부안 제5조제2항)

한 검사방법과 안전성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함

■ 제정(안)

- 사업자의 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모든 식품 등에 대하여 항상 위해여부를 확인하고 검사토록 함

○ 식품등의 위해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확인과 검사의 책무와 관련하여 국가는 그 위해의 종류, 정도, 검사의 종류, 방법, 시기 등 의 기준을 시행령이나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문제점

- 국가는 식품 등의 규격 및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식품 등을 생산·판매하는데 있어 주기적으로 위해여부를 확인·검사를 하여야 함

○ 미국, 일본, EU 등 식품선진국에서는 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성 논란이 있을 경우 그 물질에 대한 정부의 안전성 기준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간의 검토 이후에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책무도 국가가 정한 식품 등의 안전기준과 검사방법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에서 정하지 않은 위해물질까지 항상 위해여부를 사업자에게 확인·검사토록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 및 책임 행정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위해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그 물질에 대한 확인·검사도 사업자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가 정

■ 개선의견

○ 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고, 사업자는 국가가 정한 식품 등의 규격 및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식품 등의 위해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검사를 하도록 함

정부(안)	개선건의(안)
<p>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p> <p>① 생략</p> <p>②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식품등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p>	<p>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p> <p>① 생략</p> <p>② -----, 국가가 정한 식품등의 규격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검사할 -----</p>

2. 긴급대응 및 생산·판매 등의 금지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와 사업자의 피해보상[정부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내지제3항]

■ 제정(안)

- 생산·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발생이나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당해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토록 함

■ 문제점

- 제15조의 요건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의 함유 또는 위해 우려의 제기’가 일정한 정도로 신빙성 있을 것이 요구되고 그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의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관련 법령기준을 인용하거나, 시행령 등에 규정할 필요 있음

○ 제15조 긴급대응 제2항과 제16조 제1항 규정의 판매금지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장이 시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상정을 위한 절차만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금지조치 명령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하여야 함

○ 제15조의 요건과 관련하여 식품 등에서 유해물질의 함유 또는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는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법집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 각 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판매하던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금지 명령을 하여야 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규위반 여부 등 금지하여야 하는 사유를 사업자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제16조 제1항 규정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해 여부 확인시까지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어 금지명령 위반시의 행정제재가 가능함으로 제2항 규정에 별도로 사업자에게 판매금지 의무 규정을 2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 제16조 제2항 위반 시 제42조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바, 향후 위해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따라서 단서에 향후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정의)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으로 사업자에게 판매금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중대한 위해 여부 결정과 해제결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판매금지 권한기관을 수정하여야 함
- 식품안전법령에 적합하게 생산하던 식품을 정부에서 유해물질이 함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수용하여야 할 것이나
- 정부에서 금지조치한 결과가 사업자의 잘못이나 법규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금지행위 해제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의 판매 등의 금지 행위 명령제도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책임의식을 분명하게 하여야 함.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사업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

■ 개선의견

- 적합하게 생산·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위해물질 등이 함유되어 생산·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범위도 “관련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한 유해물질”로 한정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규정하여야 함

정 부(안)	개선건의(안)
제15조(긴급대응)	제15조(긴급대응)
① 생략	① 생략
② <u>관계행정기관의 장은</u> 생산·판매등이 되고 있는 <u>식품등이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긴급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하생략></u>	<u>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u> <u>식품등이 관계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을</u> <u>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호의</u>
제16조(생산·판매 등의 금지)	제16조(생산·판매등의 금지)
① <u>관계행정기관의 장은</u> 제15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당해 식품등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u>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u> <u>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그 위해</u>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생산·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삭제
③ 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u>해제</u> 하여야 한다	<u>③</u> <u>해제</u> <u>하여야 하고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실을 공표하며 금지조치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는 보상하여야 한다.</u>

3. 위반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공표(정부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 제정(안)

-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공개제한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토록 함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 각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하여야 함으로 사업자의 정보가 노출될 경우 기업경영에 치명적 손해 우려

■ 문제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공개제한 범위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협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

■ 개선의견

- 관계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반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공개제한범위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함

4. 허위신고자에 대한 신고자 보호대상 제외(정부안 제29조)

■ 제정(안)

- 사업자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 등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를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못하도록 규정

■ 문제점

- 신고인 보호조항은 내부고발자 등의 신고

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임

- 반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 법집행의 혼선을 초래하여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피해기업에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줌

■ 개선의견

- 허위신고자는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정 부(안)	개선건의(안)
<p>제29조(신고인 보호)사업자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등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를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신 설〉</p>	<p>제29조(신고인 보호)-----</p> <p>-----</p> <p>-----</p> <p>-----</p> <p>-----</p> <p>다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5. 무죄·무혐의 사실에 대한 공표에 의한 사업자 피해구제(정부안 제26조제3항)

■ 제정(안)

- 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문제점

- 식품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는

업계에 치명적 손상을 주어 보도 이후 회생 불능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지난 만두사건에서는 건실한 사업자가 생명을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 만두사건은 섭취할 수 없는 만두업체로 공개된 25개 업체가 거의 식품위생법상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최종 발표되었으나 그 피해는 국내외적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신뢰저하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 식품사건을 소비자에게 알려서 위해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일 것이나 잘못된 법적 적용에 의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과 보도기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도 잘못된 발표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확정이 되기 전 수사과정에서의 공표는 제한하여야 함. 가사 공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수사진행 경과만을 그 대상

으로 하고 추측이나 예단을 하지 않도록 공표의 범위나 방법에도 제한을 두어야 함. 무혐의 등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표하도록 하고 수사 사건의 공표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함

■ 개선의견

- 식품안전법령 위반사건을 공표한 결과 위반 내용이 무죄·무혐의·행정처분불가처리로 최종 결정될 때에는 공표에 의한 사업자 피해에 대하여 공표한 기관이 보상하도록 해야 함

정부(안)	개선건의(안)
<p>제26조(관계행정기관간의 상호협력)</p> <p>①~② 생략</p> <p>③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u>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u></p>	<p>제26조(관계행정기관간의 상호협력)</p> <p>①~② 생략</p> <p>③-----</p> <p>----- <u>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공표결과가 무혐의·무죄·행정처분불가처리로 최종 확정될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공표하도록 하며 공표에 의한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u></p>

6. 식품안전 분쟁조정관련 조항 삭제 (정부안 제31조내지제41조)

■ 제정(안)

- 식품등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히, 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분쟁조정기한을 60일로 한정하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제조자와의 분쟁은 분쟁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 소

비자가 신고하는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의하기보다 단순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청임

-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은 소비자보호법(1987.4시행)에 의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각 사업체는 소비자 상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 피해 신고 즉시 신고자를 면담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피해 보상기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처리하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이 거의 없음
- 제조물책임법(2002.7시행)에 의한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재경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에도 변호사, 시민단체, 업계, 학계 대표로 구성한 식품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

조정신청은 전무한 실정이고 각 사업자는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직접 해결이 어려울 때는 보험회사에서 상담 보상함

■ 개선의견

○ 관련 조항 삭제

- ‘제31조제1항의 소비자 분쟁’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인 분쟁의 유형을 시행령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식품으로 인한 분쟁은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이미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운영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식품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 바,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식품분쟁조정위원회를 정부와 각 시도에 두는 것은 분쟁조정보다 오히려 식품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거나 관련법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안)	개선건의(안)
제31조(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내지 제41조(준용법률) 생략	제31조(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내지 제41조(준용법률) 삭제

7. 벌칙관련 조항 삭제(정부안 제42조내지 제43조, 한나라당 고경화의원 대표발의안 제44조내지제47조)

■ 제정(안)

- 식품 등의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 추적조사를 위한 기록·보관을 아니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문제점

-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의 판매·생산등 금지 위반자의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은 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생산·판매 등이 되고 있는 식품등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필요한 조치로 생산·판매 금지를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위반시의 처벌하는 법규임

- 법 제16조 제2항에 생산·판매되고 있는 식품에서 유해물질등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해당 식품안전 법령에 의한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억원 이하 벌금과 7년이하(식품위생법)의 징역 규정에 따라 처벌 될 것임에도 벌칙 규정을 2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하여 판매하던 식품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하고, 명령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율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 위해평가에 의한 판매·금지 및 벌칙은 이미 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법에서는 삭제되어야 함

■ 개선의견

- 관련조항 삭제
 - 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에 적합

정부 및 한나라당(안)	개선건의(안)
<p>〈정부안〉</p> <p>제42조(벌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산·판매등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⑤ 생 략 <p>〈한나라당안〉</p> <p>제44조(벌칙) 제17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5조(과태료) 내지 제47조(양벌규정) 생 략</p>	<p>〈정부안〉</p> <p>제42조(벌칙) 삭제</p> <p>제43조(과태료) 삭제</p> <p>〈한나라당안〉</p> <p>제44조(벌칙) 삭제</p> <p>제45조(과태료) 내지 제47조(양벌규정) 삭제</p>

8. 식품시민감사인제도 도입관련 삭제[한나라당 고경화의원 대표발의안 제24조]

■ 제정(안)

- 사업자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및 식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나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식품시민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들 사업자는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세제상의 혜택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 위 조항은 국내외 어느 규정과 국가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는 규정이었으나 2005. 12월 이미 식품위생법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식품시민감사인을 위촉하였을 경우 공무원

의 출입검사 면제, 세제상 및 행정처분 경감 등의 혜택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자율감사”가 아닌 “부실감사”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식품위생법의 소비자위생식품감시원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적 신분의 불명확성과 이에 따른 책임소재의 문제, 영업비밀 등 보안유지의 문제 등도 야기할 수 있어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식품안전법령에서 도입여부를 자율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개선의견

- 동 조항 삭제

정 부(안)	개선의견(안)
제24조(식품시민감사인) ①~⑤ 생략	제24조(식품시민감사인) 삭제

9. 식품관련집단소송 도입관련 삭제[한나라당 고경화의원 대표발의안 제26조내지제31조,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 대표발의안 제30조내지제34조]

■ 제정(안)

- 식품으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함

■ 문제점

- 집단소송제는 소액 다수의 소비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피해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가 동시에 가능하고 피해자들이 한 번의 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음
- 다수가 피해를 입지만 개인별 피해액은 적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개인으로는 소송의 실익이 거의 없고, 소의 남발, 복잡하고

-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집단소송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조차도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선정당사자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굳이 남소의 우려가 많은 집단소송을 식품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식품의 특성상 섭취 후 식품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식품업계가 입증전환책임 등을 모두 감수하는 것은 부당함

- 따라서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 및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보호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개선의견

- 관련 조항 삭제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안)	개선건의(안)
<p>〈열린우리당안〉</p> <p>제30조(적용범위) 동일한 식품 등의 섭취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식품집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p> <p>제31조(관할) 내지 제34조(준용법률) 생략</p>	<p>〈열린우리당안〉</p> <p>제30조(적용범위) 삭제</p> <p>제31조(관할) 내지 제34조(준용법률) 삭제</p>
<p>〈한나라당안〉</p> <p>제26조(적용범위) 위해한 식품의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식품관련집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 및 수행할 수 있다.</p> <p>제27조(소송허가요건) 내지 제30조(준용규정) 생략</p>	<p>〈한나라당안〉</p> <p>제26조(적용범위) 삭제</p> <p>제27조(소송허가요건) 내지 제30조(준용규정) 삭제</p>

10. 범죄수익의 몰수 및 형량하한제 관련 조항 삭제(한나라당 고경화의원 대표발의안 제42조, 제43조)

■ 제정(안)

-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식품관련사업자의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으로 식품관련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

■ 문제점

- 범죄수익의 몰수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 등 불법자금의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서 돈세탁의 전제가 되는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입법화되었음
- 특히, 일정한 범죄를 지정하여 범죄수익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는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법령의 경미한 벌칙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도 입법화한 사례가 없음

- 상습범의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식품안전법령의 벌칙규정에서도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는 2년 이상의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여 양형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과중함
-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개선의견

○ 동 조항 삭제

-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법령의 사소한 벌칙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취득한 범죄수익 몰수나 2년 이상의 형량 하한제를 규정하는 것은 과중함으로 삭제되어야 함

한나라당(안)	개선건의(안)
<p>제42조(범죄수익의 몰수) ① 국가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법령의 벌칙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p> <p>② 식품관련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제43조(상습범의 가중처벌) 사업자가 상습으로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법령의 벌칙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42조(범죄수익의 몰수) 삭제</p> <p>제43조(상습범의 가중처벌) 삭제</p>